대한민국정부 인지세 200원
종로세무서장
인쇄승인제2003-1호

20150212001193 3-0012-001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A (Stable)" STANDARD & POOR'S RATINGS SERVICES

"AA-(Stable)" FitchRatings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100-000-2015 0061 5744 호

보험계약자	209-82-63082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피보험자	209-83-00013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보험가입금액	金 四阡九百壹拾壹萬七阡 원整 ₩49,117,000-	보험료	₩343,140-
보험기간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681 일간)		
보증내용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사업운영 협약에 따른 보조금 반환지급보증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사업운영 협약
계약기간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49,117,000-
보험기간개시전발생된채무액	

우리 회사는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 증권발급 사실 확인 안내

2015년 02월 12일

증권발급부서 : 동대문지점
부 서 장 : 조국제
담 당 자 : 황주영
전화번호 : 02-924-0031
주 소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 4층 경영빌딩 (신설동)

보험대리점명 : 진영보험
김덕희 02-921-3871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사 장 김옥찬

※ 증권발급사실, 보험약관 및 보험금 청구시 보상진행사항은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의 내용이 주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내용이 일치되지 아니한 증권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이 정정된 것은 무효이며, 기타 내용이 정정된 경우에는 증권발급부서에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인터넷 발급용)

"A (Stable)" STANDARD & POOR'S RATINGS SERVICES

"AA-(Stable)" FitchRatings

증권번호 제 100-000-2015 0061 5744 호

보험계약자	209-82-63082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피보험자	209-83-00013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
보험가입금액	金 四阡九百壹拾壹萬七阡 원整 ₩49,117,000-	보험료	₩343,140-
보험기간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681 일간)		
보증내용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사업운영 협약에 따른 보조금 반환지급보증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사업운영 협약

계약기간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49,117,000-

보험기간개시전발생된채무액

총영수보험료	₩343,140-	제3자납부액	
영수보험료	₩343,140-	제3자보험료 납부내역	주민(사업자)번호: 성명(상호):

증권발급부서	동대문지점 (02-924-0031) 황주영
보험대리점명	진영보험 (02-921-3871) 김덕희
회사사업자번호	120-81-13002

※ 보험증권사서함을 이용하시면 고객이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보험증권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사서함번호 : 2015-00375500

알아두셔야 할 사항

[계약후 알릴의무] ①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
3.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③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소멸시효] 보험료 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료의 환급]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환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환급보험료는 기납부한 보험료에서 경과보험료(최저보험료가 경과보험료보다 많을 때에는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상품의 최저보험료는 [15,000원] 입니다.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분쟁의 조정]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에 의거,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보험료 영수증을 세법상 지출증빙 서류로 사용가능합니다.

면세사업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15년 02월 12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사장 김옥찬

〈 알아두셔야할 사항 (피보험자용) 〉

증권번호 : 100-000-2015 0061 5744

보험증권 발급사실 확인

◆ 피보험자는 보험증권 발급사실을 전면에 표기된 증권발급 지점에 유선 확인할 수 있으며,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증권발급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증권발급시 "인터넷 보험증권사서함"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서함 번호를 이용하여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보험증권 출력(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상 서비스

◆ 피보험자는 채무이행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① SGI서울보증 전국 각 지점 또는 해당 보상지원단에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우편접수 가능)

②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보상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 보다 자세한 청구 절차 및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보상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업무 담당부서 안내

보상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강북보상지원단	02-3671-8115

약관 주요내용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 또는 법령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